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7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1. 6. 22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공주택 건설 주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고, 개정조문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칙을 신설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3을 “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
- 부칙에 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”토록 적용례를 신설함.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의3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)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8조의3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활용) 시장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8조의3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)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)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)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8조의3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)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